

단하고 지방세 수납검색체계의 완벽한 구축과 세무환경의 개선으로 비리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감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감사시에 취약분야를 필수적인 감사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밖에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항목은 선택적인 감사항목으로 구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되, 특히 새로운 유형의 비리발생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정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세의 징수와 관련된 법원배당금은 반드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령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조례에 따라 10~30만원)는 반드시 일련번호가 인쇄된 영수원부의 사용여부, 소액 현금수납부의 비치 여부 등 현금수납분야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 내실있는 납세자 권리 보호

가.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 기반 정착

오늘날 세정운영은 과세권자 위주에서 납세자 위주의 세정으로 변모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세정인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일단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결과통지와 연기신청시 신속한 처리,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의 안내의 철저, 과세정보의 비밀보호,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지켜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실질적 운영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토록 하게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